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7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김기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상진, 김수규,  
김정환, 김태호, 노승재,  
박순규, 봉양순, 송명화,  
송정빈, 안광석, 양민규,  
유 용, 유정희, 황규복,  
황인구 의원(19명)

## 1. 제안이유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나.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정하여”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산림교육”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u>정하여</u>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3. ~ 5. (생략)</p> <p>제3조(책무) 시장은 <u>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u>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u>」에서 <u>위임된 사항과</u> ----- <u>규정하</u> <u>여</u> ----- -----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유아숲 교육</u>” 이란 유아 (「<u>유아교육법</u>」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u>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u>을 말한다.</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3조(책무) ----- <u>산림교육</u>----- ----- -----</p>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운영 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

제5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제6조 · 제7조 (생략)

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 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  
조와 같음)



문서번호	2021081100000002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기덕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11	
회신일 : 2021.08.11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 제7조에 따라 비용 발생
  - ※ 제5조제1호 ‘유아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은 현재 총 71개소의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운영중이며, 2021년도에도 4개소 조성중임
  - ※ 제5조제2호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유아숲 아카데미 개최
  - ※ 제5조제5호 ‘유아숲 교육 홍보’는 유아숲체험원 가족축제 개최
  - ※ 제6조제3항 ‘체험원의 관리·운영’ 위탁은 현재 총 71개소 중 39개소를 위탁운영중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200,400천원(연평균 40,0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0,0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200,400천원(연평균 40,080천원)

- 총비용 = 유아숲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유아숲 교육 연구사업+협력사업
- = 97,500천원+97,500천원+5,400천원
- = 200,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유아숲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제5조제3호)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유아숲 교육 연구사업 (제7조제1항제2호)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협력사업 (제7조)		1,080	1,080	1,080	1,080	1,080	5,400
	소계 (b)		40,080	40,080	40,080	40,080	40,080	200,400
□ 총 비용 (b-a)			40,080	40,080	40,080	40,080	40,080	200,400

○ 유아숲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 97,500천원

= 연간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비용 × 5년

= 19,500천원 × 5년

※ 연간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비용 : (사)한국숲유치원협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2021년 부모와 함께하는 숲속놀이책 개발’ 예산 19,500천원 적용

○ 유아숲 교육 연구사업 = 97,500천원

= 연간 교육연구 사업 비용 × 5년

= 19,500천원 × 5년

※ 연간 교육 연구사업 비용 : (사)한국숲유치원협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2021년 유아들의 숲활동에 따른 안전실태 조사용역’ 예산 19,500천원 적용

○ 협력사업 = 5,400천원

= 연간 협력사업 비용 × 5년

= 1,080천원 × 5년

※ 연간 협력사업 비용 : 서울시 자연생태과의 2019년 ‘유아숲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사업’ 소요예산 1,080천원 적용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추계세제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이원상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